

2020년도 제3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조 2,024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2,024억 5천만원 대비 2백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9,134	2,202,450	2,202,448	2,183,315	△2	11410.9%	△0.0001%
세외수입	12,950	12,950	12,948	△2	△2	-	△0.15%
경상적	1,268	1,268	1,264	△4	△4	△0.3%	△0.32%
임시적	11,682	11,682	11,684	2	2	-	0.017%
보조금	2,391	2,185,708	2,185,708	2,183,317	-	91304.9%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792	3,792	3,792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546	546	544	△2	△2
공유재산양도	546	546	542	△4	△4
기부금	0	0	2	2	2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조 5,075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6조 3,832억 3천 6백만원 대비 1.9% 증액(1,243억 1천 1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증감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582,442	6,383,236	6,507,547	2,925,105	124,311	81.7%	1.9%	
행정 관리	소 계	295,590	2,796,384	2,801,337	2,505,747	4,953	847.7%	0.2%
	행정운영경비	126,215	126,215	126,215	-	-	-	-
	사업비	169,375	2,670,169	2,675,122	2,505,747	4,953	1479.4%	0.2%
교 부 금	3,286,852	3,586,852	3,706,210	419,358	119,358	10.0%	3.3%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기정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증감	비율
합 계	3,319,506	3,619,487	3,743,797	424,291	12.8%	124,310	3.4%
행정장비구매	1,023	1,023	1,033	10	1.0%	10	1.0%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25,329	25,309	29,981	4,652	18.4%	4,672	18.5%
사청사 청소관리	2,268	2,268	2,388	120	5.3%	120	5.3%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034	4,034	4,184	150	3.7%	150	3.7%
조정교부금	3,286,852	3,586,852	3,706,210	419,358	12.8%	119,358	3.3%

II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금번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조 2,024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2,024억 5천만원 대비 2백만원 감액된 수준으로
 -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수입’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통과(20.6.1)한 2백만원의 세입처리에 따른 예산 조정과 함께
 - 코로나19 사태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피해 지원 관련 지원 대상 범위선정 및 지원규모 형평을 고려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판매시설의 위탁사용료(2백만원)와 서울기록원 공유재산 임대수입(2백만원) 감면을 위하여 세입예산 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추경 예산	증감	추경사유
계	545,784	543,748	△2,148	
공유재산임대료	545,784	541,748	△4,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위탁 사용료 감면 △2,025천원 ○(서울기록원) 공유재산임대수입 감면 △2,023천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임대료(546백만원 → 542백만원) △4백만원 </div>
기부금	-	2,0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무과)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수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0원 → 2백만원) 증2백만원 </div>

2. 세출예산 검토

-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에 46억 7천 3백만원과 “조정교부금” 1,193억 5천 8백만원 등 총 5건에 1,243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가. 행정장비 구매

- “행정장비 구매”사업은 서소문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를 구매하고자, 기정 예산(10억 3천 3백만원) 대비 1천만원(1.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33,499	1,023,499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033,499	1,023,499	10,000

- 동 사업은 서울시 서소문 2청사 이전에 따라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증가 (기존 1식 : 1,050명 ⇒ 1식 1,200명)하였고, 그에 따른 공간구조 개선과 조리 환경 개선 및 구내식당 조리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서울시 서소문 구내식당 물품 개선 예정 내역〉

(단위 : 원)

물품명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합 계			10,000,000	
회전국솥	2,000,000	1	2,000,000	
냉장고	1,200,000	3	3,600,000	
온장고	1,200,000	3	3,600,000	
릴호스	160,000	5	800,000	

〈서울시 구내식당 주방장비 보유현황〉

물품명	수량		물품명	수량	
	신청사	서소문청사		신청사	서소문청사
국 솥	2	2	세미기	1	1
볶음솥	2	2	냉장고	8(주방6, 배식대 2)	3
위크인 냉장·냉동고	2	2	냉동고	2	3
세척기	2	2	보존식 냉동고	1	1
음수대	8	4	팬그릴	3	2
오븐	2	3	온장고	4(주방2, 배식대 2)	1
육절기	1	1	자외선 소독기	8	5
취사기	30	24	보온국통	7	5
주방카트	12(엘카3, 3단9)	6	그라인더 믹서기	1	1
양념분쇄기	1	3	조리대	10	7

- 다만, 구내식당 주방장비 수량 산출에 있어 구내식당 이용객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주방장비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기준 산정의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주방장비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고장의 수리한계 초과여부, 주방장비의 작동성과 기능 이상 유무 등을 종합적이며 세밀한 점검 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내구연한 확인 및 물품관리에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구내식당 주방장비 보유현황 및 내용연수]

물품명	내용연수	신청사		서소문청사	
		수량	구입연월	수량	구입연월
국 솥	6	6	2012.10.	2	2013.3.
볶음솥		2	2012.10.	2	2015.6.
워크인냉장·냉동고		2	2012.10.	2	2019.10.
세척기	7	2	2012.10.	2	2011.5. 2015.7.
음수대		8	2012.10.	4	2008.3.
오븐	7	2	2012.10.	3	2013.8. 2015.7. 2009.
육절기		1	2012.10.	1	2015.4.
취사기	7	30	2017.11.	24	2015.5.
주방카트		12(엘카 3, 3단9)	2012.10.	6	2009.7.
양념분쇄기		1	2012.10.	3	2019.5.
세미기		1	2012.10.	1	2015.5.
냉장고	10	8(주방6, 배식대 2)	2012.10.	3	2009.10.
냉동고	10	2	2012.10.	3	2009.10.
보존식 냉동고		1	2012.10.	1	2015.5.
팬그릴		3	2012.10.	2	2008.
온장고	7	4(주방2, 배식대 2)	2012.10.	1	2001.6
자외선 소독기		8	2012.10.	5	2017.7.
보온국통		7	2012.10.	5	2011.3.
그라인더 믹서기		1	2012.10.	1	2018.4.
조리대	7	10	2012.10.	7	2009.10.

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사 방역비 증가 필요성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1억 8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 무교별관 추가 임차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천 만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46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9,981,477	25,308,723	4,672,754
사무관리비	12,905,784	12,725,784	180,000
공공운영비	8,809,442	8,626,688	182,754
국외업무여비	40,000	40,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80,000	0
특정업무경비	270,000	270,000	0
시설비	6,276,251	1,966,251	4,310,000
기타자본이전	1,600,000	1,600,000	0

① 무교별관 임차료

- 동 사업은 무교별관 소재 부서의 서소문2청사 입주(‘19.12.21~’20.3.1이전)에 따라 무교별관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서울시 관련 단체 등의 사무 공간 등을 마련하고자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임.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 무교별관 임차료 및 관리비 180,000,000원 = 180,000천원
	증감사유
	시민이용시설의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무교별관 추가 임차

- 행정국은 무교별관 입주 부서의 서소문2청사 이전으로 기존 임차계약의 종료가 필요하고, 지속적 운영 및 상설공간이 필요한 부서의 시설의 잔류 유지 및 추진이 필요하며, 무교별관 임차 계약의 조기종료('20.3.31)에 따른 위약금(10억 9천만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음.

무교별관 현황

- 위치 : 중구 무교로 21(건물명 : 더익스체인지빌딩)
- 임차면적 : 5,587.9㎡(3·6·8·9·12·14층)
- 계약내용

임차 층	계약 기간	면적(㎡)	월 임대료(임차료+관리비)
3-B·8A-2·9층	'14. 9. 1. ~ '20. 3.31.	2,799.75	124,119천원
8B층	'15. 4. 8. ~ '20. 4. 7.	664.43	29,455천원
6A층	'15.10.24. ~ '20.10.23.	292.65	12,973천원
6B·12·14층	'19. 2. 1. ~ '24. 1.31.	1,831.07	82,231천원

기존계약 변경

- 변경내용

임차 층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종료일	월 임대료	계약종료일	월 임대료
3-B·8A-2·9층	2,799.75	'20. 3.31.	124,119천원	'20. 3.31.	변동없음
8B층	664.43	'20. 4. 7.	29,455천원	'20. 4. 7.	변동없음
6A층	292.65	'20.10.23.	12,973천원	'20. 3.31.	변동없음
6B·12·14층	1,831.07	'24. 1.31.	82,231천원	'20. 3.31.	변동없음

[무교별관 추가임차비용 내역]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총임차비용: 180백만원
	<p><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동추진지원단(임대면적:34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32백만원, 관리비: 39백만원 ○ 일자리센터(임대면적:54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50백만원, 관리비: 59백만원

- 다만, 행정국은 무교별관 계약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관련부서를 서소문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위약금 발생에 따른 공실문제를 해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의 임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시는 민간전문가(자문관 등)에게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업무공간 제공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거가 없는 상황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히, 시청 청사의 근본취지인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민간전문가들이 있는 찾동추진지원단, 일자리센터, 서울#위스유(with U)센터 등에 공공청사를 임차하여 우선적으로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무분별한 청사공간 운영으로 공간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심사시 민간전문가에 대한 업무공간 임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임대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국의 명확한 해명과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 분	찾동추진지원단	일자리센터	서울#WithU센터
주 관 부 서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여성권익담당관
계 약 기 간	'20. 7. 1. ~ '22. 6.30. (24개월)		
임 차 면 적	345.05 m^2	541.05 m^2	297.64 m^2
전 용 면 적	232.74 m^2	364.94 m^2	200.76 m^2
보 증 금	없음		80백만원
'20년 임대비용 (부가세 별도)	61백만원	95백만원	72백만원
	'20년 추경예산편성		'20년 예산편성 완료
총 임대비용 ('20.7.~'22.6.)	305백만원	479백만원	275백만원
무상임대기간	4개월		2개월
무상인테리어	3개월		2개월
의무사용기간	2년		1년

[참고자료 1]

[무교별관 임차내역]

층수	입주부서명	이전일	원상복구 공사 (계약종료일까지)	원상복구 공사기간동안 임차료	계약기간 만료일
3층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거점조성반, 도시제조업거점반, 캠퍼스타운활성화과	2019.12월말	2020.01 ~2020.02	71백만원	2020.02.16
	눈물그만상담센터	2020.02월말	2020.03	17백만원	2020.03.31
4층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2019.12월말	2020.01 ~2020.02	66백만원	2020.02.16
6층	기술심사담당관	2020.02월말	2020.03	26백만원	2020.03.31
	도시브랜드담당관	2020.02월말	2020.03	13백만원	2020.03.31
7층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창업과, 서울페이담당관	2019.12월말	2020.01 ~2020.02	123백만원	2020.02.16
8층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12월말	2020.01 ~2020.02	57백만원	2020.02.16
	사회적경제담당관, 산지방재과	2020.02월말	2020.03	49백만원	2020.04.07.
9층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자연생태과, 조경과, 공원조성과	2020.02월말	2020.03	81백만원	2020.03.31
12층	청년청	2020.02월말	2020.03	17백만원	2020.03.31
14층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도시농업과, 지역상생경제과,	2019.12월말	2020.01 ~2020.02	41백만원	2020.02.16

- '19.10.17. : 청계별관 임대차계약 변경 계획
 - '20 .2.28.까지 임대차계약기간 변경 추진
 - 위약금 면제 및 우리시의 원상복구 의무 면제 추진
- '19.12.11. : 청계별관 임대차계약 변경 의뢰(총무과→재무과)
- '19.12.31. : 청계별관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 통보(재무과→총무과)
- '19.12.31. : 무교별관 임대차계약 변경 계획
 - 만기예정('19.12.31.) 임차계약을 원상복구 고려하여 연장(~'20. 3.31.)
- '20. 1.16. : 무교별관 임차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계획
 - 1차 원상복구 : '20. 1.~2.16. (3·4·7·8층)
 - 2차 원상복구 : '20. 2.~3.31. (3·6·8·9·12·14층)
- '20.03.11. : 청계별관 보증금 533백만원 반환 완료(임대인 → 서울시)
- '20. 3.18. : 무교별관 임대차계약 변경 및 시설 임차계획
 - '20 .3.31.까지 임대차계약기간 변경 추진
 - 우리시 부서 산하시설 공간 임차 및 이와 연계한 위약금 면제 추진
- '20. 3.30. : 무교별관 (기존)임대차계약 변경 의뢰(총무과→재무과)
- '20. 4. 2. : 무교별관 (기존)임대차 변경계약 체결 통보(총무과→재무과)
- '20. 4. 7. : 무교별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의뢰(총무과→재무과)
- '20. 4. 9. : 무교별관 (신규)임대차 변경계약 체결 통보(총무과→재무과)
- '20. 4.16. : 무교별관 보증금 1,964백만원 반환 완료(임대인 → 서울시)
- '20. 4.23 ~ 28. : 찾동추진지원단 이전 재배치(본관 → 무교별관)

붙임 3

무교별관 추가 임차계획

- 임차건물 : 더익스체인지서울 ※ '14. 9월 ~ '20. 3월까지 우리시 임차건물
 - 위 치 : 중구 무교로 21
 - 소유자 : (주)화산테크 (싱가포르투자청)
- 임차기간 : '20. 7. 1. ~ '22. 6.30. ※ '04.28.~ 찾동추진지원단 사전 입주
- 임차면적 : 1,183.74㎡(전용면적 798,44㎡ 전용률 67%), 3층
- 계약조건

구 분	찾동추진지원단	일자리센터	서울#WithU센터
주 관 부 서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여성권익담당관
계 약 기 간	'20. 7. 1. ~ '22. 6.30. (24개월)		
임 차 면 적	345.05㎡	541.05㎡	297.64㎡
전 용 면 적	232.74㎡	364.94㎡	200.76㎡
보 증 금	없음		80백만원
'20년 임대비용 (부가세 별도)	61백만원	95백만원	72백만원
	'20년 추경예산편성		'20년 예산편성 완료
총 임대비용 ('20.7.~22.6.)	305백만원	479백만원	275백만원
무상임대기간	4개월		2개월
무상인테리어	3개월		2개월
의무사용기간	2년		1년

※ 서울#WithU센터는 담당부서에서 임차 추진('20년 예산편성 완료)

○ 임차시설 개요

찾동추진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7, 8층)에 분산 배치 중으로 사무공간 통합을 통한 효율적 행정 도모 • 이전 후 유휴공간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부서 신설 시 적기 대응에 활용
일자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의 취업, 창업, 구인 등을 위해 지속적 운영
서울#WithU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성희롱정보 통합관리,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시민문화 확산

② 청사 방역비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 중 청사방역비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청사내 다중이용시설 및 사무실을 살균소독하기 위해 1억 8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독 추진 사항

- 소독기간: 2020. 2. 8.(토) ~
- 소독대상: 신청사, 서소문1, 2청사, 남산청사, 송월동청사
- 소요예산: 190,923천원(총무과 공공운영비 158,423천원, 예비비 32,500천원)
- 소독방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소독 실시
 - ※ 소독업체: 신청사 - (주)한국방제, 시청별관 - (주)한국환경개발
- 소독내용: 평일에는 다중이용공간 소독(매일), 주말에는 청사 전체 소독(1회)
 -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추경요구예산 : 182,754천원
(청사 방역비 158,423천원, 코로나19 비상 대응 직원 지원 13,403천원, 초과근무단말기 비접촉방식 전환 등 10,928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공공운영비	○ 코로나19 대응 청사 방역비 등 182,754,000원 = 182,754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소독 실시 등

-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살균소독으로써 행정국이 청사관리를 위해 월 1회 실시하는 해충 방역과는 구별되는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소독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바, 해당업체가 방역장소 및 방역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방역 세부장소 및 회당 지출내역

○ 본청사 등

구분	장소	면적(m ²)	산출내역 (일별)	비고
평일	본청사 1층 (로비, 민원실, 상황실 등)	749	300천원 (6,048m ²)	1층
	기자실 1,2	615		2층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2,098		B2층
	기획상황실, (부)시장실 등	819		6층
	각 층 회의실	727		2,3,5,7,8,9,10,11층
	하늘광장	639		9층
	휴게실, 흡연실	457		B2, 2, 3, 4, 10, 11층
주말	본청사	75,854	2,200천원 (90,742m ²)	1층 ~ 13층, B2~B5층
	시민청	7,697		B1~B2층
	도서관	7,191		1~4층

○ 서소문청사 등

구분	장소	면적(m ²)	산출내역 (일별)	비고
평일	서소문1청사 1동 로비, 상황실, 화장실	850	340천원 (3,536m ²)	1층
	서소문1청사 2동 로비, 화장실	250		1층
	서소문2청사 카페, 휴게실	987		20층
	서소문1청사 트랙	49		13층
	서소문청사 구내식당	1,400		후생동 2~3층
주말	서소문1청사	36,307	4,500천원 (55,572m ²)	1,2,3,5동, 후생동
	서소문2청사	16,779		본관동(지상 4~20층)
	남산별관	2,099		본관동(지하2층~지상4층)
	송월동 청사	387		본관동(지하1층~지상3층)

코로나19 관련 방역 월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방역구역	방역 횟수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2월	평일	5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1,690	
	주말				
3월	평일	23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42,400	수의계약 (3.1~3.31)
	주말				
4월	평일	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공공운영비(예비비)	32,500	수의계약 (4.1~4.30)
	주말				

5월	평일	회의실, 민원실, 기자실, 구내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19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45,660	수의계약 (5.1~5.31)
	주말	사무실 포함 청사 전체 방역	5			
6월	평일	회의실, 민원실, 기자실, 구내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22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40,500	수의계약 (6.1~6.30)
	주말	사무실 포함 청사 전체 방역	4			

③ 서소문 청사 외벽보수 및 서소문 구내식당 환경개선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 중 서소문 1청사 외벽보수(39억원)와 서소문 구내식당 환경개선(4억 1천만원)을 위해 총 2건에 4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시 설 비	○ 서소문1청사(1동) 외벽보수	= 3,900,000천원
	- 외벽보수	= 300,000천원
	300,000,000원	=
	- 외장교체(외장재, 창호, 단열재)	= 3,500,000천원
	3,500,000,000원	=
	- 용역비(안전진단, 설계, 감리)	= 100,000천원
	100,000,000원	=
	○ 서소문1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	= 410,000천원
	- 주방공간 확장 및 방수공사	= 160,000천원
	160,000,000원	=
- 덤웨이터 설치 및 부대공사	= 150,000천원	
150,000,000원	=	
- 식당종사자 휴게실 등 설치	= 100,000천원	
100,000,000원	=	
증감사유		
- 서소문1청사1동의 노후된 외벽에 대한 조속한 안전 조치 필요		
- 서소문1청사 구내식당의 협소하고 노후된 조리실 및 휴게공간 개선		

- 서소문 1청사 외벽보수는 최근 발생한 서소문1청사 외장타일 낙하 사고('20.4.24)로 노후화된 외장재에 대한 조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39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임.

구 분	사업비(천원)	비 고
공사비(외벽보수)	300,000	위험부위 제거·보강
공사비(리모델링)	3,500,000	외장재·창호 교체 / 단열재 설치
용역비	100,000	안전진단비, 설계비, 감리비
총사업비	3,900,000	

□ 서소문 1동 외벽 정비 계획

1. 외벽 긴급 보수공사(시행 중)

- 공사내용 : 외벽 위험부위 제거 및 보강
- 추진일정 : '20. 5월 ~ 6월

2. 외벽 리모델링 추진

○ 추진방향

- 외장재·창호 전면 교체로 건물안전성 및 미관 향상
- 외벽전체 단열재 설치로 근무환경 개선 및 친환경건축물 조성

○ 추진일정

- '20. 6월 ~ '20. 8월 : 설계용역
- '20. 9월 ~ '20. 10월 : 공사발주 및 계약
- '20.11월 ~ '21. 6월 : 공사시행

- 서소문 청사의 외장타일 낙하사고는 자칫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설물 개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행정국은 긴급 안전진단 검사 결과, 외장재 들뜸현상이 외벽전반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외벽 리모델링만으로 건물노후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4.25~5.10 : 안전통로 및 안전망 설치 및 긴급안전진단 시행

- 한편, 서소문1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은 조리실 및 주방공간 개선과 식당종사자의 휴게실과 사무공간 지원시설을 마련하고자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임.

구 분	사업비(천원)	비 고
공 사 비	410,000	주방확장 및 덤웨이터 추가, 휴게실 등 설치
집기교체비	10,000	노후 주방집기 교체(행정장비 구매 예산 반영 사항)
총사업비	420,000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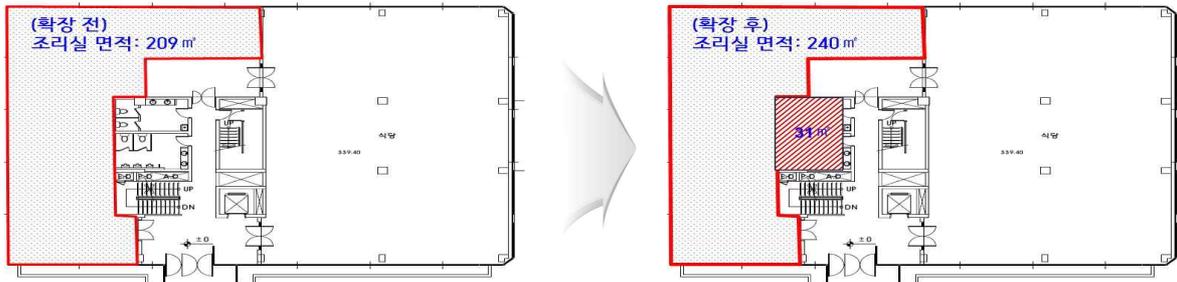
- 사업기간 : '20. 3~9월
- 사업위치 : 중구 덕수궁길 15 후생동 2~4층
- 면 적 : 1,115㎡ (일반홀 771㎡, 조리실 280㎡, 사무공간 28㎡, 휴게실 36㎡)



- 서소문 구내식당 환경개선은 주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서소문2청사 이전에 따른 구내식당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조리실 운영과 식당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주요 개선사항

- 쾌적하고 안정적인 조리실 운영을 위해 2층 화장실 공간을 조리실로 확장(209㎡→240㎡, 31㎡증가)
 - 기존 2층 화장실 공간은 간단한 세면공간으로 조성(화장실은 1, 3층을 활용)
 - 덤웨어와 국솥 추가 설치, 노후된 오븐, 환풍기 등 내부 잡기 및 설비 교체



- 구내식당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등 전면 개선(64㎡→148㎡, 84㎡증가)
 - 이용실적(연 5회 미만)이 미미한 4층 강사대기실 및 폐백실 등(84㎡)을 활용, 휴게실(36㎡→64㎡) 및 사무공간(28㎡→46㎡), 탕비실·다용도실(0㎡→38㎡) 등으로 재정비
 - ※ 직원 수(공무직 및 파견근로자 등 31명) 대비 휴게공간(36㎡)이 1인당 1.16㎡로 턱없이 부족

- 다만,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따른 휴게공간과 사무공간의 배치시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소문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기간(3주예상) 휴관이 불가피한바, 휴관에 따른 불편 최소화화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시청사 청소관리

- 위생직 공무원의 현원부족에 따른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 발열 체크존 간호사 채용을 위해 “시청사 청소관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조정 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388,241	2,268,241	12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11,057	1,791,057	120,000
사무관리비	271,384	271,384	0
공공운영비	178,300	178,3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27,500	27,500	0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발열체크존 간호사 인건비 3,250천원 * 4명 * 5개월 * 0.9509 = 61,808천원
	○ 발열체크존 간호사 보험료 3,250천원 * 10.5% * 4명 * 5개월 * 0.9509 = 6,490천원
	○ 청사관리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2,438천원 * 3명 * 7개월 * 0.9509 = 48,684천원
	○ 청사관리 기간제노동자 보험료 2,438천원 * 6.2% * 3명 * 7개월 * 0.9509 = 3,018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간제근로자(간호사 등)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	

- ‘기간제 노동자(청사관리원) 채용’은 위생직 공무원의 현원부족으로 청사관리실 관리인력으로 채용(3명)된 인력의 인건비 확보를 위해 5천 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행정국은 각종 회의 준비 및 청소지원 등을 위해 위생직 공무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나, 청사관리실 인력중 일부가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함 (정년퇴직2명·전출 1명)에 따라 원활한 업무 진행이 곤란하여 인력을 충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청사관리원 현황]

'18.12월 현원			⇒	'20.1.17.字 현원			⇒	'20.3.16.字 현원(기간제 채용 시점)				
총원	회의실 운영 (위생직)	사무실 청소 (위생직)		총원	회의실 운영 (위생직)	사무실 청소 (위생직)		총원	회의실 운영 위생직	사무실 청소 기간제	기간제	
9명	5명	4명		6명	3명	3명		9명	3명	2명	3명	1명

※ 행정국은 위생직 공무원 현원이 없고, 인사이동도 많지 않아 정년퇴직, 전출 등 사유가 발생함에도 충원을 할 수 없어 상당기간(1년)동안 부족한 인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다만, 청사관리 인력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바, 소요인원 대비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청사관리 인력 및 업무현황]

연번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1	위생0급	0 0 0	○ 청사관리 업무 총괄, 시장단 및 부시장단 환경미화 및 회의장 설치운영
2	위생0급	0 0 0	○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2·3·4 층 회의실, 6층 로비 및 계단청소
3	위생0급	0 0 0	○ 대회의실, 영상회의실, 8·9 층 회의실, 6층 로비 및 계단청소
4	위생0급	0 0 0	○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비서관실, 국회정당협력관실 등 청소
5	위생0급	0 0 0	○ 시장실, 비서관실, 시장실 앞 복도 회의실 청소 및 정리정돈
6	위생0급	0 0 0	○ 행정2부시장실, 기록정리실, 젠더특보, 정책특보 등 청소
7	기간제	0 0 0	○ 대회의실, 간담회장, 5·7 층 회의실, 6층 로비 및 계단청소
8	기간제	0 0 0	○ 대회의실, 소회의실, 10·11층 회의실, 6층 로비 및 계단청소
9	기간제	0 0 0	○ 행정1부시장실, 민생정책보좌관실, 소통전략실 등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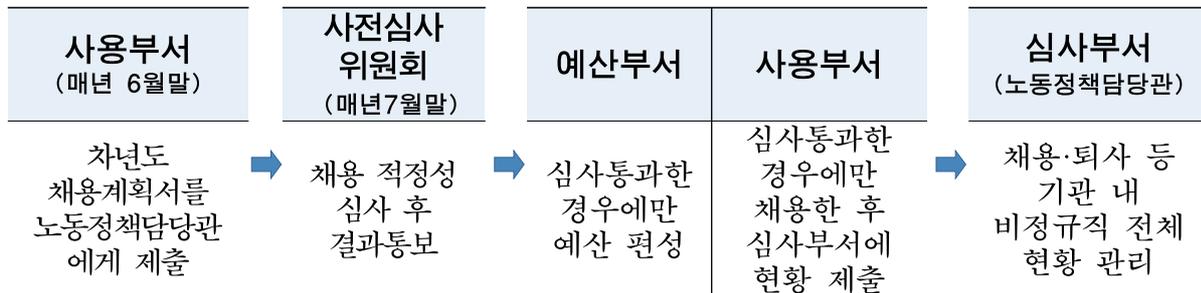
- 또한, 올해 채용된 3명의 기간제 노동자중 2명이 퇴직 공무원이 임용되었는 바, 사실상 정년 연장의 소지로 비취질 소지는 없는지와 좋은 않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 나아가, 관련 인력공백이 1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예산에 미편성 한 후, 이미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기간제 간호사 채용”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청사별 발열 체크존에서 근무할 간호사(기간제 노동자) 관리인력 4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6천 8백만원을 증액조정하려는 것임.
- 코로나19가 「심각단계」 로 격상함에 따라 감염자 접촉을 최소화하며, 시청사 출입자 대상 발열 확인과 상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증액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사업의 간호사 채용심사시 행정국은 「사전심사위원회」 승인 및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하였는 바, 이는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의 원칙적 규정을 넘어선 것으로 행정국의 관련 지침 준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채용 사전 심사

- (기본원칙)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 (채용계획) 사용부서는 매년 6월말까지 채용목적, 업무, 인원, 예산 등을 포함한 차년도 기간제노동자채용계획을 수립해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 (심사절차) 정기심사는 예산편성 절차와 연계하여 연1회 실시하고 당해년도 발생한 채용사유(예:신규사업등)는 매 분기별 수시심사
 - 예산·조직관리·인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채용적정성 심사
 - 사전심사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정원 및 예산 반영

[정기 심사 운영 절차]



- 한편,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채용된 간호사 급여의 경우, 병원간호사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과 찾동 방문간호사 평균시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청사 출입인원이 빈번하고, 그에 따른 관리 업무 등이 상당할 것인 바, 업무 강도에 적절한 임금 산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용

-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공무직 정원 및 다자녀 출산지원금 신청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인 바, 기정 예산(41억 8천 4백만원) 대비 1억 5천만원(1.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184,292	4,034,292	150,0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184,292	4,034,292	150,000

- 금번 추경 증액편성 사업은 공무원과 동일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용으로 공무직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능률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추경은 공무직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인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150,450천원) 납부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발생 예상으로 기인한 것인 바, 공무직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를 통한 부담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고용의무** 준수(사업장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년 기준 노동자의 **3.4% 의무고용**

※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상 의무고용 비율은 5%(노력기준)

적용대상		연도	
		2018	2019년
국가·	공무원	3.2%	3.4%
자치단체	노동자	2.9%	3.4%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인 노동자수 / 상시노동자수

- 신규채용 사유 발생 시 사업장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 계획 수립 (개별/병행 채용)
- 2배 가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분야 발굴 및 채용 고려
- 장애인노동자의무고용 산정 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채용도 인정되므로 사용부서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 검토

○ 또한, 행정국은 다자녀 출산지원 포인트 신청인원이 10명에 이르러 예산 편성인원(9명)을 상회하는 등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이 2020년 본예산 편성시('19. 7월) '2,057명'에서 4명으로 소폭 증가('20. 5월말 기준 '2,061명)하고 있는바, 관련 예산을 과잉 추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삭감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무직 정·현원 현황 비교]

구 분	'19.7월	'20.1월말	'20.5월말
정 원	2,057명	2,070명	2,061명
현 원	1,971명	1,923명	1,998명
차 이	△86명	△239명	△63명

※ 행정국도 현재 정·현원 및 향후 정원이 큰 변동 없을 것으로 감안하여 **예산현액 3,883,841천원** 대비 **집행예상액을 3,800,246천원**으로 추정하여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예산편성 기준 및 '20년 집행예산액 비교]

구 분	당초 산출내역 ('19.7월 기준)	'20년 집행예산액 ('20.5.31. 기준)	비 고 (예산잔액)
합 계	4,034,292천원 (예산현액 3,883,841천원)	3,800,246천원	83,595천원
선택적 자율복지 포트인	3,702,600천원 (1,800천원*2,057명)	3,596,400천원 (1,800천원*1,998명)	106,200천원
생명·상해 단체보험료	308,550천원 (150천원*2,057명)	153,846천원 (77천원*1,998명)	154,704천원
다자녀 출산지원 포트인	23,142천원 (2,500천원*2,057명*0.45% ※ 연간 9명)	50,000천원 (2,500천원*20명)	△26,858천원

마. 조정교부금

- 2020년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3조 7,062억 9백만원) 대비 1,193억 5천 7백만(3.2%)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706,209,885	3,586,852,018	119,357,867
자치구조정교부금	3,706,209,885	3,586,852,018	119,357,867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여러 여건에 맞춘 기본적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

-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9년도 조정교부금 예·결산차액분(4,194억원)중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한 3,000억원을 제외한 차액분(1,193억 5천 7백만원)을 금번에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19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31,099	35,293	4,194
계(C=A+B)	137,609	156,165	18,556
보통세(A) ¹⁾	136,074	154,598	18,524
취 득 세	42,738	55,908	13,170
주 민 세	5,450	5,790	340
자동차세	11,321	9,401	△1,920
레 저 세	1,310	1,282	△28
담배소비세	5,652	5,654	2
지방소비세 ²⁾	17,218	18,503	1,285
지방소득세	52,386	58,059	5,673
지난연도 보통세(B)	1,535	1,567	32
취 득 세	111	221	110
주 민 세	27	60	33
자동차세	884	699	△185
지방소득세	513	587	74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재산세 제외

2)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근거 지방소비세 6% 부분 중 지방교육세분 제외

- 현재 시점에서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 관련 조례상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과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기정예산	3차 추경예산	증가액
조정교부금	35,869	37,062	1,194
일반교부금	32,582	33,356	774
중 로 구	570	585	15
중 구	152	156	4
용 산 구	673	690	17
성 동 구	1,103	1,131	28
광 진 구	1,324	1,356	32
동 대 문 구	1,653	1,691	38
중 량 구	1,829	1,872	44
성 북 구	2,086	2,135	49
강 북 구	1,825	1,866	41
도 봉 구	1,797	1,838	42
노 원 구	2,482	2,543	61
은 평 구	1,998	2,043	45
서 대 문 구	1,421	1,455	34
마 포 구	1,005	1,030	25
양 천 구	1,487	1,524	37
강 서 구	1,826	1,870	44
구 로 구	1,721	1,761	40
금 천 구	1,271	1,299	29
영 등 포 구	873	894	21
동 작 구	1,393	1,426	32
관 약 구	1,964	2,009	45
서 초 구	96	99	2
강 남 구	0	0	0
송 파 구	531	545	15
강 동 구	1,503	1,538	35
특별교부금	3,287	3,706	419

- 첫째, 2020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6.6%)가 이미 6.6%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110.4%)시 11.4%를 초과하는 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21%→22.6%)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교부금 추경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변화〉

구 분	'20년도 교부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년도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A)	'20년도 추경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B)	증감 (B-A)
강남구 포함	71.1%	106.0%	110.4%	4.4%p
강남구 제외	64.1%	100.8%	105.5%	4.7%p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보통세의 21%→22.6%) 관련 조례 개정 경위〉

※ 2015년 조례 개정시 시장 지시에 의해 조례 개정을 위한 소관 상임위나 의장단에 업무보고나 사전협의 한 번 없이 교부율을 명시(22.78%)하여 인상을 기정사실화 발표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시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심각히 저해한 사안임.

○ 추진경위

- 2015. 7. 21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정교부율 인상 합의문(「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일방 발표

※ 조정교부율 인상(현행 21% → 조정 22.78%)

※ 2016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목표로 인상안 도출(2015년 97.1%)

※ 2016년도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 2,862억원

- 2015. 10. 30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현행 21% → 조정 22.76%)

- 2015. 11. 9 관련 조례 및 예산 의회 의결 전 각 자치구로 조정교부금액 가내시

- 2015. 12. 21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진통 끝에 관련 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의회 의결(현행 21% → 조정 22.6%(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기준)로 수정 가결)

※ 재원조정교부금 인상 관련 주요 쟁점

①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한번 인상한 교부율 인하 어려움

- ② 복지 수요 및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교부율 상향 조정과 같은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 변경보다는 재정보전 등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조정교부금 목적(자치구간 균형발전) 훼손)
- ③ 자치구간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구는 혜택 미비)
- ④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 없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은 시 재정여건(경상적
지출 과다) 만을 어렵게 하여 광역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 아울러,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
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4,193억원)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
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5년도	22,213	25,585	3,372	◦ '16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416억원 상계)
'16년도	23,915	28,566	4,651	◦ '17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 잔액 416억원 상계)
'17년도	26,444	30,897	4,453	◦ '18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8년도	29,214	33,241	4,027	◦ '19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9년도	31,100	35,293	4,193	◦ '20년 추경 계상하여 정산 예정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
------	-------	-------	-------